

제410회국회
(정기회)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11월21일(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
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1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1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1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1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1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1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상정된 안건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2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2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 2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 2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 2
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2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 2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 2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2
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 2
1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2
1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2
1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2

1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2
1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2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2
1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2

(14시01분 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4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5173)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525)
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869)
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194)
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216)
6.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390)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416)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04)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00)
1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9682)
11.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36)
12.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667)
13.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8970)
1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474)
15.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6)

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541)

17.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1)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결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정부가 제출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군무원 채용 시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군무원의 채용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용률은 90% 이하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개정안은 군무원 채용 시 지역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장 추천을 받은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는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지역 학교장 추천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군무원 채용절차에 도입하려는 점, 그리고 군무원 채용 창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무원 주거 안정화 등 민군

상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칙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 및 제도 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국방부에서는 1년의 경과규정을 두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국방부는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동의합니다.

○설훈 위원 지금 군무원들 채용도 채용률 90% 이하의 저조한 상황인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까요? 지금 현재 있는 제도를 그냥 되풀이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지금 현재 군무원 채용률을 보면 22년 기준으로 89%인데, 특정 격 오지 지역에 소요가 있는데 그쪽에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여건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소요되는 군무원들은 해당 지역의 인원으로 선발해서 보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입니다.

○설훈 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냥 버터 날까요? 어떻습니까? 금방 또 나가고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일단 그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고 하는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생활권이 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조건을 다는 겁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근무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선발되면 특정 기간 동안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일부 정도의 TO를 할당해서 그 지역에서 뽑아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설훈 위원 조건을 그렇게 붙여서 뽑는 겁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은 양구, 인제 이런 지역에서 9급 군무원 뽑으면 서울에 있던 인원이

가서 6개월 만에 다 그만둬요. 그래서 그 지역 인원을 뽑으면 아파트 문제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제한되게 하게 되면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입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여 대체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지자체의 보호구역 완화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동법에서 ‘대체 시설’, 대체 띄고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대체시설’도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국방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부담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보호구역 완화 관련 협의 진행 시 갈등요인이 해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 및 수정의견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제가 발의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에 민통선이 있는데 민통선을 북쪽으로 추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통선 통제 초소 추진을 요구한, 예를 들어서 군청에서 초소를 하나 지어 준 겁니다. 지어 줬는데 국방부에서 국방부

재산으로 못 잡습니다, 현재는 법에 의해서, 못 잡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설을 군이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수, 유지 이런 것은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CCTV도 설치해 줬는데 이것도 망가지면, 예를 들어 군청에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고 나서는 군 재산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안 잡아 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법을 낸 겁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나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6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 의원 대표 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사업타당성조사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자구 수정이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를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설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되는 사항 중에서 제2항 3호 ‘그 밖에 사업 추진 방법이나 예산 산

정이 명백한 사업 등과 같이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것은 필요 없는 얘기 아니에요? 빼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사업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현재 지금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기재부 지침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법률에 옮긴 것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K-21 보병전투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2차 사업이 22년 10월에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양산을 하는 건데 그런데 양산 사타가 늦게 끝나 가지고 23년도도 아닌 24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사업과 물가상승률에는 크게 변동이 없음에도 양산 사타를 반드시 해야 돼서 사타의 실익성이 없음에도 사타를 함으로써 사업이 1년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산 사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훈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비닉사업도 그런 데 해당되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비닉사업은 1호에 들어가 있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알았어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4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 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품질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방산업체 등의 유효기간 갱신비용을 절감하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므로 타당해 보입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도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설훈 위원 그런데 이게 국방품질인증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1년 더 늘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3년으로 했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건데 이것을 다시 4년으로 늘려 준다는 것은 무슨 취지일까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에서…… 이게 한 번 경신할 때마다 기업의 불편함과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갱신하는 걸로 운영을 해 왔는데 국조실 의견대로 4년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품질경영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그다음에 기업의 편익은 증대되고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4년을 5년으로 늘리지, 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그런데 이게 또 너무 길면, 경신 기간이 많이 길면 저희가 관리에 또 문제가 있어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3년을 했던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처음에 3년 했을 때 4년 하자 하는 게 왜 없었겠어? 5년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을 테고. 그런데 3년 하는 게 적합하다 해서 3년으로 했을 텐데 1년을 더 늘린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무슨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간다는지…… 1년 늘리면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갑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것 이제……

○설훈 위원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증취득 경신할 때 평균적으로 한 2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1개 기업당? 한 품목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18만 원입니다. 아, 2180만 원 맞습니다.

○설훈 위원 218만 원으로 내가 들었는데?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말씀……

○설훈 위원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2180만 원 맞습니다.

○설훈 위원 2180만 원?

○한기호 위원 제가 방산 기업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했는데 실제로 3년과 4년은 우리가 생각해서는 1년이지만 업체에서는 그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경제적으로 2000

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지만 품질 확인은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증하는 자체만 연장을 해 주면……

확인도 계속합니다, 매년. 매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 달라 하고 중소기업체들이…… 이것은 큰 대기업체들 건 아닙니다, 적용되는 분야가. 그래서 제가 연장하자는 법을 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은 해 주고 대기업은 하지 말라는 것은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부담하다고 얘기하겠지.

○한기호 위원 대기업에는 큰 함정이나 소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납품이 되면 끝나는 건데 중소기업은 예를 들어서 식품도 그렇고 통조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인증을 다시 받고 다시 받고 하니까 그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체계 이런 덩치 큰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18쪽입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필요한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합동성 및 사업 규모 등을 검토하고 합동참모의장과 협의하여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합동성 또는 상호 운용성이 미미한 각 군에 특화된 소규모 무기체계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각 군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하여 각 군에서 자체 소요를 결정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무기체계가 전력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타당해 보입니다.

소요 제기 및 결정 과정에서 합동참모의장이 합동참모회의를 거쳐 소요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절차를 고려하여 각 군에서 소요 결정하는 경우에도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서 소요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국한하도록 수정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절차 수정 부분이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이 각 군에서 소요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국한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쪽입니다.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에는’을 ‘소요를 결정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요.

○방위사업청장장 강환석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지요.

○설훈 위원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잘 감이 안 잡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지금 소요군한테 이것을 넘기는 것은 성능개량사업들 사업이 대략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육군에서 운용하는 소형전술차량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용하다 보면 그 일부분의 성능을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방탄 능력을 올린다든지 거기에 올려져 있는 총이라든지 소총이라든지 기관총 이런 것을 좀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올릴 때 이런 걸 성능개량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체계가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도 지금은 다 합동참모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각 군에서 특성화해서 운용되는 무기체계니까 이런 것은 육군참모총장이 소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이 발의된 것입니다.

○설훈 위원 취지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게 어느 선까지 되고 어느 선까지는 안 된다는 결정은 누가 해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그것은 이미 총사업비가 500억 미만 사업 중에서 지금과 같은 해당 사업이 될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소요 결정을 하고 그 이상은 당연히 합참에서 하고 이렇게……

○설훈 위원 500억 기준으로?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조금 더 부연설명하면 500억 기준이고 해당 군에만 쓰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살포식 지뢰다 이것은 해군·공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육군만 써요. 그런데 이미 살포식 지뢰를 추진하는데 합참까지 계속 가서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

에 소총도 한국형 소총이라고 예를 들어서 특전사만 쓰는 소총 이것도 해·공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능개량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성능개량 하는 걸 합참의장까지 가는 것보다 위임해 줘서 각 군 총장들이 하는 부분으로 가면 훨씬 시간이 빨리 된다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차관님이 전력 전문가가 오니까 아주 설명을 명쾌히 하네요, 보니까.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6쪽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안 제7조 개정안은 국과연의 사업 범위에 방산물자 등의 수출 및 민수용 제품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시험, 사업화 및 기술지원을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방산수출과 국방과학기술의 민수 사업화를 위한 국과연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국과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산수출 및 민수 사업화 관련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14조 단서 신설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방위산업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제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시험, 사업화 및 기술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검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기술지원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29쪽 하단의 수정의견으로는 조항 이동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산수출 및 민수제품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제1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수정의견으로는 자구수정이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8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의견을 냈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검토의견 및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것 방사청장이 얘기하든지 방사청에서 얘기하든지 실례를 하나 들어 보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게 실례를 들면 지금 특히 수출의 경우인데, 특정 국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중동 국가 같은 경우에 대공방어 무기체계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중동화, 현지화시켜서 개발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신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는 주로 우리 국과 연하고 같이하고 싶어하는 게 있고, 그런데 국과 연 사업 범위에 직접 현지화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무기는 한 3개 업체, 레이더 업체 그다음에 탄 업체 그다음에 차량 업체가 같이 복합적으로 해당 국가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소관이 각각 있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협상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제 이번에 수출을 성사시킬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기업이 있고, 연구소가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수출사업이 진행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국과연 임직원 겸직허가는 왜 설명을 안 해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겸직은, 그런데 그 연구소기업이 설립이 되면 기본적으로 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겸직 부분은 다른 정출연 사업과 동일하게 거기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겸직을 하게 하는데 겸직 범위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수준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적으로 운영할 게

확입니다.

○설훈 위원 내 얘기 초점은 왜 설명을 안 하느냐고, 전문위원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이것 왜 설명을 안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이것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는 토론을 거쳐야 된다고. 토론도 없이 그냥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래요, 시비를 걸어 가지고 못 하게 할까 싶어서 그래?

각 대학도 교수들이 기업체를 설립하고 있다고, 연구하면서. 그것은 나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MIT에 가 봤더니 MIT는 20년 전에, 30년 전에 벌써 하더라고. 그래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게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ADD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도록 터 줘야 된다고. 그래야 도망 안 가고 하게 된다고. 좋은 인력들이 ADD에 있다가 그냥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이런 숨통을 안 터 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서 이걸 터 났다고 얘기를 해 주고 ADD 직원들도 ‘앞으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ADD에 계속해서 근무할 생각을 갖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가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면 제일 좋고 아니면 보좌진들한테도 하고 또 심의할 때도 그 핵심을 설명하세요. 나도 이 법을 검토하면서 어저께 ADD 소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실제 ADD는 어떻게 원하는지, ADD 소장도 이걸 원하고 충분히 나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 주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8항, 이상 2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2쪽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승 의원,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요원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행위나 가혹행위 등으로 2회 이상 경고처분 시 처벌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2회 이상 경고처분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강을 바로잡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각 개정안의 비교는 이현승·윤후덕 의원안 비교표와 같습니다.

두 개정안은 법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후덕 의원안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 유형 일부가 처벌 대상행위 유형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요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로 인한 경고처분으로 처벌 필요 시 개정안 제89조의3제1호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으로 적용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요원의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두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회복지요원의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를 고려할 때 조문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것 엇그저께 검토하면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먼저 얘기하고, 자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병무청 차장입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요원 가혹행위 현황을 먼저 보시게 되면 2020년부터 5건, 11건, 14건, 10건 이렇게 점진적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사회복지 가혹행위에 대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한 17건 정도의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적별도관리제도인데요. 이것은 강대식 의원님이 병역법 발의하신 내용인데 병역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이 되는 인원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서 이들의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를 관리 대상 선정결과 통보 등에 따라서 병역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병역 이행 과정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실 이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협회 등을 통해서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역판정검사 적정성도 반기별로 점검·확인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제도 시행을 2017년도부터 했는데 그때 이후로 병역면탈 적발에 대해서 기소된 33명 중에 체육선수가 26명으로서 거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으로는 공직자 및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및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2만 7000여 명이며 이 중 체육선수가 74%에 해당이 되는 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지금처럼, 아까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런 것이네요. 차관님하고 차장님들은 정부 측 안에, 전문위원에 동의한다고만 하지 말고 백 데이터가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렇게 먼저 보고를 하고 해 주세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설훈 위원 그런데 2회 걸리면 무조건 그때부터 처벌받는다는데 처음은 정신없이 했다 치고, 두 번째 또 하면 무조건 이것은 처벌을 한다는 건데 가혹행위로 인한 사회복지요원 경고처분 대상 및 사유를 보니까 이게 쉽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큰 무슨, 일상적인 상황에서 흔히 저

지를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게 두 번 들어가면 처벌해 버린다면 이는 오히려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병무청차장 김종호** 물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하고 노인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는 보도 사례들을 본다면 한 번의 위반 사례에도 처벌을 해야 할 만큼 강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복무기강도 확립하고 또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4회 경고를 이번에 2회 이상 경고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李憲昇 위원** 실제로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처벌받은 예가 있습니까?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4회 이상 해 가지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소위원장 김병주** 이 뒤에 17건 나온 이게 예입니다.

○**李憲昇 위원** 이건 경고 아닙니까, 경고? 그러니까 경고를 네 번 이렇게 받아 가지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냐고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2회 이상 고발된 사람이 10여 명이 있습니다. 매년 10여 명 정도가 발생합니다.

○**李憲昇 위원** 2회 이상 말고 4회 이상.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李憲昇 위원** 정확하게, ‘예’가 아니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래서 그동안에 4회 이상……

○**李憲昇 위원** 경고처분 4회 이상 누적돼 가지고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매년 10여 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이상 경고는 매년 한 1000여 명 정도 됩니다.

○**설훈 위원** 경고처분받으면 5일간 복무 연장을 해요? 이것은 경고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징계네.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경고처분이 2회 이상 경고가 되면 이제 고발이 돼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설훈 위원** 현재는 이게 4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1회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취지가……

○**설훈 위원** 아니, 현행법은 4회로 돼 있으니까

4회 이상일 경우이니까 이걸 다 4회 이상이겠지. 아닌가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1회를 위반한 인원은 1000명이고 4회까지 위반해서 처벌받은 인원은 1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설훈 위원** 그런 것 같은데? 22년에 14건이었고 21년에 11건이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李憲昇 위원** 병무청 실무자 누구 안 나와 있어요? 명확하게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8페이지 표에는 경고처분이 23년 8월까지 17건 발생했다는 건데 저는 경고처분이 아니라 실제 처벌받아서, 4회 경고 받아 가지고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이게 처해진 사례가 얼마나 되냐고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병무청 사회복무국장 최구기입니다.

지금 유인물로 드린 것은 경고처분을 받은 인원을 명시한 것입니다. 유인물에 없는 내용으로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게 되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작년 기준으로 10명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앞으로 2회 하게 되면 작년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 돼요? 더 많아지겠네요?

○**설훈 위원** 훨씬 많아질 수 있지.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조금 더 증가한다고 보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런데 왜 4회에서 2회로 줄이려고 하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복무기관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또는 여러 가지 장애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행위를 했을 때 좀 더 처벌을 강화하려고 하고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여기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4회에서 2회로 줄여 달라 뭐 이런 것?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기관에서는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계속 보도되고 예정처에서 지적사항으로는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어디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국회예정처에서요.

○李憲昇 위원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것은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혹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조금 눈 감아준다든지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4회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짧은 복무기간 동안에 똑같은 사례가 여러 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제 4회 이상, 그런 군 의무복무기간에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세 번 하고 또 안 해 버리면 처벌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그래서 조금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2회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2회를 하게 되면, 저 법 취지는 동의하고요,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너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오히려 사회복지요원이 사소한 이것에 또 불이익이 될 수 있는데 3회 하면 어떨까요? 한 두 번 정도는 사실은 경고를 하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3회로 바꾸면 바로 고발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2회로 바뀌어지면 한 번 주의를 주고 두 번 지적받으면 바로 고발조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송갑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잠깐…… 제가 지금 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봐 보십시오.

8페이지 참고자료 2 맨 위의 위반행위 유형, 그런데 그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제가 보기에 첫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에 비해서 가운데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경우 등’ 이게 상대적으로 두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경미한 걸로 느껴지는데 여기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까지를 포함해서 통틀어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이헌승 의원님 안은 그러는 건지……

○설훈 위원 그거지.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유형이 1, 2, 3이 있는데요.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두 번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무조건 아웃이다, 이게 이헌승 의원님 안인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 위반을 하면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는 게 현재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가 두 번입니다. 나머지 상대 사회복지요원을 폭행하거나 지금 현재 시설에 있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폭행했을 경우 등은 네 번을 해야 고발을 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무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폭행을 하면 앞에 있는 개인정보 취급을 하는 두 번만에 고발하는, 도로 올려서 합해서 두 번을 하면 고발하는 걸로 하자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한 번 위반한 사람이 수용자를 폭행했다 그러면 그 두 번으로 해서 고발이 가능하도록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그러면 개인정보를 위반했던 사람이 혹은 폭행했던 사람이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이것을 범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가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그것은 이번에 분리되고 나면 위에 있는 처벌로 2회로 가는 것이 밑에 있는 네 번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폭행이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폭행을 말하는 건지, 언어적 폭행을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여기 내용에 경고처분 대상 및 사유에 보면 ‘철도 승객과 말다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폭행으로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철도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말다툼’ 이런 사례도 있다고. 이것도 처벌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면 내가 뭐 장애인들을 잘못 대하면,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안 한 부분을 잘했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흔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두 번째 했다 그래서 처벌을 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징역형을 받는다는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처벌해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형사상 사건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자고. 사회복지요원들이 뭐 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사실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다면 이걸 지나치다는 거지요. 4회까지는 나는 이해가 간다고 봐요. 3회 정도 했으면 ‘아, 내가 다음에 처벌받는구나. 정말 조심해야지’, 아무 짓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장치를 하는 건 괜찮은데 한 번은 실수로 그냥 했다 치고 두 번째도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규정하는 것 보면 철도 승객과 말다툼했다, 이것 말다툼 두 번쯤 할 수 있다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두 번 말다툼했다 그래 가지고 처벌해 버리면 이게 뭐야? 사회통념상 이것은 안 맞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쪽에서 헌법소원하거나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문제가 걸린다고요. 내가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도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두 번 말다툼했다 해서 그냥 처벌받는다고 그러면.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냐고. 왜 이것을 입법화하려고 그러냐고.

○**국방부차관 김선호** 위원님, 잠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 및 가혹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훈 위원** 아니, 그런데 참고자료에 지금 있잖아요. 참고자료에 사례를 들어 설명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다고. 이것 안 가지고 있나? ‘병역법 개정안 관련 참고자료’ 해 가지고 두 장으로 돼 있는 것, 이걸 의원실로 보내 줬어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죽 사례가 나와 있다고. ‘이름, 송 아무개 00재활센터, 박 아무개 00구청’ 죽 나오면서 말다툼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말다툼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 사례를 잘못 적은 건지, 보고를 잘못된 건지, 실제로 이런 사례를 정확하게 기술한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내용대로 하면 장애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장애인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그리고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말다툼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말이야. 말다툼했다고 그래서 그냥 말다툼 두 번 하면 처벌을 해 버리면 무슨 사회상규하고 맞느냐 이거지.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정부 측 답변할 겁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역법에 있는 그 조항을 그대로 읽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 국한해서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게 제3호의2입니까?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그렇습니다. 3의2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설훈 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 자료를 만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여기도 철도 그것도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장애학생이 쏟은 음식에 손을 대려 하자 과격하게 제지했다’, 쏟은 음식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 하고, 그것 먹으면 그렇잖아요. 좀 과격하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일은 사실 돌보다 보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두 번으로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법의 형평성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과한 면이 있다고 보여져요.

사회복무요원도 큰 틀에서는 약자라고 봐요, 사회적인 큰 틀에서는. 왜냐, 지금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대로 된 봉급이나 이런 것도 못 받고 의무복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인원들의 임무 수행도 또 중요한데 적절점에서, 2회는 좀 과할 것 같고 4회는 또 너무할 것 같고 한 3회 정도로 조정하면 어떨까요?

○**송갑석 위원** 아니요, 다른 분들이 저를 좀 방해할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법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다시 제가 여쭙볼게요.

8페이지 참고자료 2, 현행법에는 위반행위 유형이에요. 위반행위 유형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잖아요. 말을 하면 답을 좀 해 주세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송갑석 위원** 위반행위 유형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잖아요.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예.

○**송갑석 위원** 하나, 둘, 세 가지.

○**병무청사회복무국장 최구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회 때 고발하고……

○**송갑석 위원** 아니, 그냥 제 말만 생각을 하시고. 참고자료 2에 ‘위반행위 유형’ 그래서 세 줄로 돼 있잖아요, 8페이지.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알아들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개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예, 3개. 그러면 현행법은 그 3개를 제가 1, 2, 3이라고 할게요. 현행법은 1번에 한해서 2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이 되고 2번에 한해서는 4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이 되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3번에 한해서도 4회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이 되고, 이게 현행법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다음에 또 현행법상 이것은 각각 카테고리가 돼 있어서 각각이 두 번, 네 번, 네 번이지 이게 섞여서 네 번이 됐을 경우에 아웃 이런 것은 없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 없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이게 현행법.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헌승 의원님 안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유형을 통틀어서 그 무엇이든지 간에 두 번을 경고처분을 받으면 고발이 된다 이런 건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런 취지 아닙니다.

○송갑석 위원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유형만 두 번이면 고발된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가혹행위에……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고발된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다음에 첫 번째 정보 검색 같은 경우는 원래 두 번이었지요. 그다음에 원래 네 번인 근무태만 이것은 이헌승 의원님 안에도 여전히 네 번이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다음에 이헌승 의원님은 1번을 한 번 위반했을 경우에, 3번을 또 한 번 위반했을 경우도 묶어서 고발한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러니까 통틀어서……

○송갑석 위원 이게 이헌승 의원님 안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런데 윤후덕 의원님 안은 다른 것은 똑같은데 1번을 3번과 횡수를 합치지 않는다 이게 윤후덕 의원님 안이지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차이점은 정보 검색·열람의 경우와 그다음에 가혹행위 부분을 각각 2회로 계산하자는 겁니다.

○송갑석 위원 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이헌승 의원님 안은 통틀어서 두 번이고 윤후덕 의원님은 각각 두 번이니 네 번 정도 위반이 돼야 고발이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헌승 의원님 안에서 한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지요. 1번을 한 번 범하고 3번, 폭력을 또 한 번 범했을 때 고발되는 것 이게 아니라 3번도 한 번은 너무 가혹한 것 같으니 두 번 정도, 이게 이제 제가 수정을 내서……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송 위원님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2회라는 게 절대 불변의 법칙은 아니고요.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강 확립을 하고 약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3회로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김병주 그렇게 할까요, 3회로?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송옥주 위원 3회로……

○李憲昇 위원 아니, 3회도 좋은데 혹시 또 이게 계속 악용될까 봐 우려하는 것인데……

○병무청차장 김종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 사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면 이것을 다음에 다시……

○李憲昇 위원 아니요, 지금 3회로 하시고.

그런데 차장님, 지난번 제가 청장님하고 법안 하고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물었는데 실제로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아 고발 조치한 사례가 있느냐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병무청에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내가 그때 질의할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알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고 우리 설훈 위원님께서 두 번은 좀 가혹한 것 같다, 세 번으로 하자. 저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우리 송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가혹

행위 등을 두 번 했을 경우, 정보검색·열람, 정보보호법 위반 그것도 두 번 하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 정리 한번 해 보세요. 되게 헛갈리는데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병무청 차장님,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차장님이 한번 정리해 봐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호의 수정의견—오른쪽 맨 끝부분—을 보시요. 거기의 제33조제2항제3호의2가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제6호가 타인의 정보검색 또는 열람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수정의견이 통틀어서 2회였는데 통틀어서 3회로 이렇게 개정하는 방향……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렇게 되면……

정보 이것은 원래 2회라면서요. 구분해야지. 정보는 엄하게 처벌이 돼야 되기 때문에 2회에 처벌이 되는 거고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회로 되는 것 아니에요?

○송갑석 위원 제가 한번 하면, 그냥 이렇게 합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폭력이 4회였잖아요. 그 4회를 2회로 하는 게 우리 이현승 의원님 안이었잖아요. 그것을 2회로 하지 말고 3회로 하자 이 안이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4회 때 처벌하는 것을 3회로만 고치자는 거예요. 정보 공개는 2회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두고.

○송갑석 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 하나가 남은 게 이현승 의원님 안은 1번하고 3번을 각각으로 하지 말고 묶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니, 이현승 의원님도 그것을 묶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갑석 위원 묶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것은 정보 보호, 검색 부분하고 이 폭행행위만 묶어서……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 1번하고 3번.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나머지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은……

○송갑석 위원 빼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빼고입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일 때는 그럼 몇 회로 할 거냐 이것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병무청차장 김종호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그 의견에……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원래 정보 유출 이건 되게 엄히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2회 했던 건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4회로 했던 것만 3회로 고쳐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알겠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송갑석 위원 아니, 나머지 4회가……

거기中间的 근무태만 이것은 4회 그대로 있는 거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송갑석 위원 있는 거고, 가혹행위만 4회에서 3회로 좁혀지는 거고?

○병무청차장 김종호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근무태만도 4회에서 3회로 되는 것이지요, 4회짜리가 다 3회로.

○병무청차장 김종호 아니, 그것은 4회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알았어요.

너무 복잡한데 다음에 할까요, 이것은?

○병무청차장 김종호 이번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도 중요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각심을 좀 높여야 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병무청 설명이 명쾌하지가 않아.

알았어요.

○설훈 위원 위원장님 제안대로 3회로 조정하면 돼요. 나머지는 현행대로 하면 돼.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심사자료 10쪽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병적별도관리 대상 체육선수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단체 소속 선수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일부 종목—당구, 볼링, 복싱·바둑 등—과 관련한 법인·단체는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단체임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속하지 않아 대한체육회 등에 가맹된 법인·단체 소속의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병적이 별도로 관리되는 반면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고려할 때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 단체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동 안건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심사 시 한기호 위원이 병무청장이 병적별도관리 대상 스포츠 단체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병무청장이 병적별도관리 대상 스포츠단체 지정 시 그 지정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셨습니다.

14쪽입니다.

이에 국방부 및 병무청은 과거 입법례에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공공단체 선정 등을 병무청장 훈령으로 정한 사례가 다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병무청이 병적관리가 필요한 비영리체육단체 선정 시 해당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검토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참고자료 4에 병적별도관리 대상 추가 필요 단체 현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병무청차장 김종호 병무청 차장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바둑을 왜 아마추어 이렇게 했지? 바둑 다 프로 선수들인데, 물론 아마추어도 있지만. 분류를 이렇게 해 놔지? 바둑 둘 줄 모르는 사람들이 했구면. 바둑은 전부 다, 물론 아마추어 대회도 있지만, 다 프로 선수들인데.

바둑을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랬나? 왜 바둑을 별도로 아마추어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해 놔지?

○병무청차장 김종호 입영동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장헌서 병무청 입영동원국장 장헌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훈 위원님 말씀대로 대체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둑 자체가 보면 프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로도, 비영리단체로도 또 이렇게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 가지로 현행법에서, 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의 71개 종목하고 그다음에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프로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5개이고, 그다음에 해외 활동 국가대표가 6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71개 종목의 대한체육회 가맹 체육단체에서……

이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에서 이렇게 각 종목별로 예를 들면 바둑이라든지 볼링, 당구, 복싱 이런 것들이 보면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프로 협회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훈 위원 그러니까 바둑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바둑은 아마추어 최정상이면 프로로 입단을 하려고 그러다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바둑을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자꾸 분류를 그렇게 하는데 바둑은 다 프로예요. 프로로 생각하면 돼요. 아마추어는 그냥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아마추어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아마추어 대회도 있긴 있지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이 다 프로로 입단하려고 그러다고.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장헌서 그런데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법에서 말하는 프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부장관이 선정한 그 5개 종목만 지금 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그러니까 바둑이 지금 아시안게임에 들어가 있다고.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장헌서 예, 맞습니다.

○설훈 위원 아시안게임에 들어가 있으니까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을, 지금 국방부하고 문화체육부하고 의견이 좀 안 맞는 모양인데 바둑은 다 프로

예요, 프로. 프로로 생각해야지 그것을 아마추어로 별도로 분류를 하면 바둑 상황에 대한 이해를 못 해서 그런다고.

다시 조정해요, 이것은. 문체부하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바둑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건지 합의를 해 가지고 들어와야 돼. 정리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장현서** 문체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라 가지고 나온 그 5개 종목만 프로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체부에서는…… 이 5개 종목 자체가 복권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설훈 위원** 잠깐만.

바둑 둘 줄 압니까?

○**병무청입영동원국장 장현서** 못 둡니다.

○**설훈 위원** 못 두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기원 이사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요, 다시.

○**소위원장 김병주** 알았어요. 이것은 설훈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까 다음번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설훈 위원** 바둑을 모르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화체육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은 프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오세요. 모르면 그런 소리 해요.

○**전문위원 천우정** 전문위원이 한 가지 첨언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배구, 골프, 농구, 야구, 축구가 있는데 이 종목들은 스포츠토토 지정 종목들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지정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문체부장관이 관리하는 것은 스포츠토토 종목으로만 이제 프로스포츠로 규정을 하는 거고……

○**소위원장 김병주** 그래서 이런 거는 병무청하고 전문위원이 사전에 좀 설훈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것은 문체부하고 다시 한번, 충돌이 될 수 있으니까……

병역법 취지나 공정한 병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것들의 협의라든가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더 숙성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李憲昇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아까 제가 제안한 법안, 서로 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8에 대해서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희들이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소위원장 김병주** 쉬는 시간이에요?

○**李憲昇 위원** 휴식 시간에.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 끝나고 휴식을 좀 하고 할게요.

○**李憲昇 위원** 7항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것은 이따가 두드릴게요.

○**李憲昇 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8항은……

○**소위원장 김병주** 오케이.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15분에 속개해서 계속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병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사청 법안은 다 끝났지요? 그러면 방사청은 이석해도 되겠지요?

이석하세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병역법 정리가 전문위원, 좀 덜 됐으면……

○**李憲昇 위원** 다 됐습니다. 두드리면 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 됐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아니, 그런데 아까 바둑까지, 그것까지 됐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그것도 됐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설훈 위원** 준비한 사람 정성을 생각해서 다 하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바둑 관련된 3건 다 오케이.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다음 자료가 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참고로 심사경과는 지난 10월 5일 날 본 개정안에 대해서 상정과 축조심사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소위 심사 요지입니다.

지난 법안소위에서 송옥주 위원님께서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승인권자를 변경하는 개정안은 현행법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권한의 변경이 수반되는 등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서는 개정안 전체에 대해 소위원장과 송옥주 위원님을 포함한 법안소위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하여 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으셨고, 한기호 위원님께서서는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 배분의 측면으로 보면 국방부의 설명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동 조문들과 검토보고는 지난 법안소위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의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쪽지로서 첫 번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차별 지원시행계획 수립 주체 등 변경이 안 제12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3번,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승인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안 제13조와 14조이고, 네 번째 군공항 이전사업지원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얘기해 주세

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제시하신 일부 보완 사항을 반영한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안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제가 반대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요, 지금도 그 반대 의견이 저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대구를 대표하시는 임병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인데 이 법안에 기속되는 것은 대구뿐만 아니라 광주의 군공항과 수원 군공항과 관련된 부분들도 법안의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수원 군공항과 관련된 부분은 얼마 전에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국제공항과 관련된 특별법을 내셔서 그게 국방위원회도 아니고 국토위원회 소관 법안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쉽게, 한쪽에 있는 법안들이 통과가 되거나 의결이 되는 부분들이 다른 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종전부지와 관련된 자치단체 주민의 이익은 많이 반영되는 반면 이전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곳의 의견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앙부처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역할 설정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법안이 쉽게 통과되거나 의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만요, 병무청 오늘은 다 끝났지요?

○병무청차장 김중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전문위원, 다 끝났어요?

○전문위원 천우정 예.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병무청도 머니까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병무청차장 김중호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국방부차관님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과 승인을 안 해 주신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는 이 개정안 자체가 지원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고요. 또 이전지역 주변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도 좀 강화되고 또 종전부지 지자체장에 대한 관리 감독도 좀 더 강화된다는 취지에서 지금 현재 안을 마련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아직 동의가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아, 그래요?

○李憲昇 위원 신중하게 검토 후 통과?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이것은……

○한기호 위원 송옥주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 조항은 빼 달라고 그러면 빼고 하면 안 되나? 여기에 항목이 죽 있잖아요, 변경시키려고 하는 항목들이. 이 항목들에서 ‘그러면 이것은 빼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양쪽의 입장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송옥주 위원 빼 달라고 하는 게 핵심 아니에요?

○한기호 위원 그것 빼고서 법안 통과시키면 되지.

○송옥주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니까 지금 송옥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 사업 이것을 이관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설훈 위원 그러니까 군공항 이전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불안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송옥주 위원 그렇지요. 좀 더 시간을 주세요, 검토할 테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구의 K2 비행장은 옮기는 것으로 확정이 돼 가지고……

○송옥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병헌 의원이 이런 법을 냈는데 수원공항은 가려고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태고 광주비행장은 가려고 하는 곳은 있는데 그쪽에서 거부하는 상태고 이렇게 때문에 3개 비

행장이 다 달라요.

○송옥주 위원 그런데 법이 통과가 되거나 의결이 되면 다른 법까지도 효력을 미치거나 기속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좀 더 검토를 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저희 위원회에서는 1명이라도 반대했으면 조금 더 숙려하고 했으니까 이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李憲昇 위원 임병헌 의원하고 나랑 바뀌야 되겠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우정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을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견은 별도로 나눠 드린 법률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실 자료는 이 설명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민간 대행 우려사항 해소를 위한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5일 법안소위에서 지뢰대응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만 다만 지뢰제거의 민간 허용에 관해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대행 우려에 대한 해소 대책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작전지휘관의 동의를 받은 지역만 지뢰제거 대상지역으로 선정토록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에 민간 대행업체 직원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법률안 제11조(지뢰등의 탐지·제거 주체)에 ‘지뢰등의 탐지·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그리고 제2항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인력·자본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등으로 지뢰 등의 탐지·제거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 한기호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핵심 두 가지가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를 구체화하는 것이어서 이번 수정안은 그것을 해당 작전지휘관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 지역으로 명확하게 명시를 했고요, 또 거기에 관여되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있어서 그 위원에 위촉되지 않도록 그걸 선별할 수 있는 것을 관련 규정에 넣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그때 의견을 주셨던 한기호 의원님실과 소통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번에 국방부가 아주 잘했네요. 그때 의견 주셨는데, 조율하고 했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설훈 위원 지뢰 제거는……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설훈 위원 먼저 말씀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다 해소되고 했지만 이 법은 과거에 두 번이나 상정됐다가 폐기된 법입니다.

그러면 왜 상정됐다가 폐기됐는가? 사실 이 법을 지금 만들려고 뛰어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을 보강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우선 민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근 토지 중에 지뢰가 가장 많은 곳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구에 지뢰지대가 아주 벨트 형태로 짙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제가 실제로 군단장을 할 때 경험한 것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땅인 경우 지뢰지대를 가진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지뢰가 있는 땅을 소유한 주민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왼쪽 밭, 오른쪽 밭은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가운데 내 밭만 사용하고 있지 못

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패소를 하고 결국은 군에서 그것 때문에 지뢰제거를 하러 병력을 동원해서 지뢰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작전지휘관과 장관과는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저는 이것 제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 생각을 우선적으로 받아 줘야 된다 해서 작전지휘관에게 권한을 좀 더 부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들을 총 20명으로 구성했는데 인원이 일단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다음에 위원을 구성할 때 통상 지뢰업무를 군에서 현역으로 있을 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병입니다. 그래서 공병이 여기 들어오시면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방지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20명은 좀 많아요. 그래서 한 15명이나 그 이하로 줄였으면 좋겠다. 20명씩 되는 것은 너무 많다.

○소위원장 김병주 그러면 15명 정도 하시지요.

○한기호 위원 예, 20명이면 너무 많아요.

○소위원장 김병주 예, 20명이면 많지요.

○한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논의되지 않고 하는데 지뢰제거 단가가 심각하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뢰 제거하는 단가가 어떤 식으로 책정될지 모르지만 제거 단가도 국방부가 어디서 정하든지 정해야 될 거예요. 대통령령에 넣든지, 안 넣으면 엄청나게 단가가 비쌀 겁니다. 그래서 국방예산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높기 때문에 지뢰제거 단가도 꼭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과거에 이 법이 폐기되는 과정을 좀 봐 왔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개인의 지뢰제거 자격, 법인의 지뢰제거 자격 이 조건을 상당히 세심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돼요.

이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도 하신 얘기가 ‘해외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해외에 나가려면 실제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나가야지 능

력이 없는 사람이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도 상세하게 대통령령에서 다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 뜻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뢰가 매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거되지 않아 가지고 국민생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고 또 간간이 이렇게 지뢰가 터지면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 가는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국가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시바빠 이걸 제거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소소한 부분은 들여다봐서 고칠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큰 틀의 지뢰제거법을 만들어서 지뢰제거에 적극적으로 정부와 전 국민이 나서도록 해야, 전 국민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마는 지뢰제거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태했다라는 것은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법이 나왔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었느냐. 여론이 환기가 안 되고 했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이런 법도 없이 지뢰제거에 그냥 무심하게 있었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정치권을 엄청나게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한시바빠 이 법을 수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통과를 시켜서 지뢰제거에 직접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한기호 위원이 지적하신 말씀은 부분적으로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이고, 지금 김병주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법안을 내놓은 분들의 한결 같은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한기호 위원 생각도 그것하고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더라도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한기호 위원님 말씀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지뢰대응기본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및 제14항 지뢰의 제거 등 지뢰

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통합하여 정리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방부차관이 와서 이런 법률안 조율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지난번에 여기에 아주 토의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의견 있는 위원들 제시하면 사전에 조율을 충분히 해 주기 바라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정안 제안 이유입니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제안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청회 진술 요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진교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은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에 대해 장기복무 신청자 전무, ADD 취업 실적 미흡으로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목적 달성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이 제정안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ADD도 정책 방향에 맞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이동만 카이스트 교학부총장의 진술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 대학인 카이스트와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 고급 인재 양성 및 연구개발에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제정안은 교육과정 및 공동

학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학 교육과정 등에 대한 카이스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김순수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은 국방첨단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양성·활용하려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국방부는 내부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인력 소요를 판단하여 이공계 우수 인재가 복무 가능한 계급·보직을 확보하고 전역 후 진로와 연계하는 방안, 두 번째 국가재정 중복 투자방지를 위한 기존 사관학교 시설·교수진 등 인프라 활용하는 방안, 세 번째 현행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정책연구 중인 군사과학기술전문대학원(가칭) 설립 등 유사제도 중복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네 번째 4년 의무복무는 타 사관학교와 형평성 문제 대두가 예상되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병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은 그간 운영해 온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본 법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단 선제적 검토 필요 사항으로 첫 번째, 국방 분야 연구인력 수요와의 연계, 두 번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세 번째 전문교육과정 마련 및 운영을 책임질 전담 조직 설치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졸업 후 진로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도희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제정안은 기존 제도들이 우리 국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스라엘 탈피오토의 외형만 형식적으로 모방했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수 인재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고안, 장기복무 관련 근거 마련, 이스라엘 전담조직을 벤치마킹한 총괄·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제정안의 체계입니다.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법문 표현에는 일부 차이는 있으나 주요 체계는 사관학교 설치법과 크게 차이가 없으며 고등교육법과 경찰대학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의 조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새롭게 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생이 군 장교로 임용되므로 군인사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동 개정 법률안이

함께 발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쪽, 조문별 사항에 대한 보고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조항입니다.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및 이를 통한 국방첨단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전보장 등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제정안은 과학기술사관학교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방첨단과학기술 발전과 국가안전보장 등 법률의 목적과 체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조 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 조항입니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심화교육 등을 위하여 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 안 제3조 수업연한입니다.

학사는 4년, 석·박사과정은 각각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입학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학사의 경우에는 17세~21세, 고등학교 졸업 학력, 신체기준 등을 입학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사관학교 설치법에 미혼 요건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학원은 사관학교 설치법보다 폭넓게 모든 장교, 준사관·부사관 및 군무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확성 제고를 하는 측면에서 동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의견에 대해 국방부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교육과정입니다.

사관학교와 동일하게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 운영하고 일반학과정은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제6조 기초군사훈련입니다.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하도록 하고 이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필요성과 장교후보생으로서의 신체 단련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정안은 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 전체 기간 동안 12주 이내의 훈련을 하려는 취지이나 연간 12주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과 같이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도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안 제7조 학위 수여 규정입니다.

사관학교, 경찰대학과 동일하게 학사학위, 석사·박사학위 수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안 제8조 교육과정 공동 운영 규정입니다.

군사학과정을 제외한 일반학과정을 카이스트와 국방부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과학기술사관학교와 카이스트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대학의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및 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법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우수 인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는 카이스트의 학위를 부여하는 것은 법안의 취지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반학과정의 경우 교육과정 등에 대한 카이스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 국방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기술사관학교는 일반학과정을 카이스트에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동 운영'이 아닌 '협력'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학위 공동 수여는 법체계상 하위법령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교육과정 공동 운영은 고등교육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고 공동명의 학위 수여 또한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고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쪽, 안 제9조 졸업자 임용에 대해서는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육·해·공군 소위로,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중위로 임용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문언대로 해석을 한다면 준사관 등이 석사로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중위로 임용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동의하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무복무 사항은 학사과정 이수자가 4년간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의무복무 6년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상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악용 소지를 줄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9쪽, 제11조와 제12조는 교장 등의 임명에 관한 규정으로 사관학교 설치법 등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안 제13조 전역자에 대한 지원은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고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였을 때 지원 근거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22쪽, 부칙입니다.

현행 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교육과정 준비, 시행령 제정 등에 대한 안내사항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2년 경과를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기타 검토 필요사항으로 국가의 책무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수정의견에 동의하고 있고, 두 번째 입학정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는 법률에 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나 현행 타 입법례를 보면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국방부가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4쪽입니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에 따른 연계 개정 규정으로 의무복무일과 시행일이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군인사법도 함께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전체적으로 수석전문위원님이 제시하신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고 아까 중간에도 나왔지만 단 한 가지, 의무복무기간을 지금 4년으로 설치법안에 되어 있는 것은 국방부가 타 사관학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6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면서 법안 발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 국방부의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저는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교육기간의 보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원장 김병주 담당 국장이나 과장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해병 대령입니다.

교육기간의 보수는 아직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으나 만약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현행 사관생도나 또 학군장교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등을 참고를 해서 적정 보수가 지원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호 위원 입학할 사람이 있다고 예측하세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지금……

○한기호 위원 이 법은 정말 취지도 좋고 좋아요. 그런데 입학할 사람이 있을까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좀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지금 ADD에 우리가 기술사관이라고 해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 인원 있지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몇 명 보내서 몇 명 남아 있어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지금 저희가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로 해서 한 해 25명 정원인데 한 20여 명 정도 임관을 시키고 있고 남아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 거기 ADD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나가지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예, 그렇습니다. 의무복무기간인 3년 복무 후에 전원 전역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3년 의무인데도 3년 딱 마치고 다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6년을 하면 아예 지원자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에 본래 사관학교에 석·박사과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예,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학원을 둘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옛날에 했었지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예, 과거에 90년대 중반에 한 7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 폐지를 했습니다.

○한기호 위원 왜 안 하지요?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보수·인력이나 기타 인력운용상에 다소 제한사항이 있어서 그때 당시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폐지를 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법은 대단히 훌륭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실제로 걱정하는 게 입학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물론 6년 마치고 나가서 사회에서 또 아주 훌륭한 활동을 하면 국가적으로는 결코 손해는 아니에요. 손해는 아닌데 이 법을 선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방부가 고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국방부교육훈련정책과장 이종문 예.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유예기간이 2년이니까 2년 동안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 학교 설치법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 법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주 다음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날 발의가 되어서 2020년 11월 9일 날 상정된 이후에 소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병복무기간 산입제도 시행 이전인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첫 번째, 그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면 군인연금법에 따른 신규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산입된 사병복무기간만큼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 주요 요지입니다.

군인연금법은 수급권자가 복무 당시 기여한 금전 및 그 납부기간에 비례하는 퇴직연금 등의 금전을 퇴역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재직기간 산입은 법 개정 당시 복무 중인 사람을 적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서 퇴역하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등을 수령하고 신분 및 급여 등 법률관계가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직기간 산입을 소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등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고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소급입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저해 가능성, 과도한 재정소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참고로 제정안의 내용은 지난 제16대 국회 이후 총 일곱 차례 제안되었고 모두 임기 말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소급입법에 따른 법적 안정성 저해, 과도한 재정소요,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기획재정부 또한 법률 개정 후 상당 기간인 39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재직기간 산입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동 법률안과 같이 참전군인의 사병복무기간을 인정할 경우 2023년 기준 최초 200억 원, 향후 5년간 890억 원의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의견입니

다.

○소위원장 김병주 오늘 기획재정부 누구 왔나요?

○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예.

○소위원장 김병주 잠깐 나와서 기획재정부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김완수입니다.

저희의 의견은 아까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신중 검토하자는 내용이고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급기여금을 내야 되는데 소급기여금 없이 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시에는 형평성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병복무기간 산입을 위해서는 소급기여금 납부의무가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대상자의 납부의무를 제외하고 있어 이것은 다른 타 수급권자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추가 재정 부담 및 보증금 규모 확대가 우려됩니다. 군인연금 인정 시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타 직역 연금에서 동일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군인연금은 수지 적자 상태이고 국비 보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과거 제도 도입 시에 소급효 제외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재정 부담 및 법률 안정성 등 측면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다고 한 판례도 있는 점을 참조해 볼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부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알았어요.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이것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노병들이, 실제로 여기 법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입법했다가 폐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실제로 몇 번 만났습니다, 과거에도 만났고 올해에도 만났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국방부의 입장과 기재부의 입장을 저희가 들었지만 실제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또 공무원에 대한 것도 형평성이 똑같이 문제가 돼서 군인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법이 되면 국방부뿐 아니라 일반공무원에도 반드시 해 줘야 합니다. 국방부만 가지고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공로 위로를 한다든가 다른 형태가 돼서라도 해야지,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다. 많지 않으시고 아주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마냥 ‘국가재정상 안 됩니다’, ‘형평성에 안 됩니다’, ‘과거에 기여금 안 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은 이 노병들에 대한 대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이분들에게 국가로서 위안을 드릴 수 있는 조치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또 없습니까?

이것 16대 국회부터 일곱 차례나 이렇게 제안해서 계속 폐기됐는데 이제는 이것을 제정해도…… 물론 예산이 들기는 하겠지만 계속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들이 많으시고 하니까. 이번에 통과하면 어때요, 차관님?

○국방부차관 김선호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적인 형평성이나 이런 것하고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넘어서까지 이것을 동의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병주 이것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하시던데 혹시 다른 의견 없습니까?

○李憲昇 위원 저도 심정적으로 참 해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네요. 계속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병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전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안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병 주	설 훈	송 갑 석	송 옥 주
이 채 익	이 현 승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천 우 정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차 관	김 선 호			
법 무 관 리 관	유 재 은			
인 사 기 획 관	오 영 대			
보 건 복 지 관	김 은 성			
군 사 시 설 기 획 관	천 승 현			
전 력 정 책 관	원 종 대			
첨 단 전 력 기 획 관	황 정 오			
군 공 항 이 전 사 업 단 장	박 길 성			
규 제 개 혁 법 제 담 당 관	안 유 진			
병 무 청				
차 장	김 종 호			
입 영 동 원 국 장	장 헌 서			
사 회 복 무 국 장	최 구 기			
방 위 사 업 청				
차 장	강 환 석			
기 획 조 정 관	정 기 영			
방 위 산 업 진 흥 국 장	김 일 동			
국 방 기 술 보 호 국 장	권 영 철			
국 방 과 학 연 구 소 장	신 진 교			
부 소 장				
국 방 기 술 품 질 원 장	이 창 우			
품 질 연 구 본 부 장				
기 획 재 정 부 장	김 완 수			
연 금 보 건 예 산 과 장				